




공사 시방서

< 역사 유리도어 사용개선 공사 >

2014.11

	담당	부장	팀장	본부장
결재			전결	

B&G Metro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발주한 "역사 유리
도어 사용개선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따른다.

1.2 작업일반

- (1)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 (2) 계약상대(이하 "을"이라 한다)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가설재 및 감독자
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내판, 위험표지판, 기타 안전시설에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 (3) 모든 자재는 KS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 반입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시공기간 동안 타공중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5) 철거된 자재를 감독이 지정한 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 (6) 철거재 및 제작 작업시 잔재 운반시 기지내에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여야 한다.
- (7) 제작 설치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을"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 (8) 기타 제작 설치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을"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전, 후)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시공 완료 후 2부 제출. (사진첩 1부, 별도 양식에 의거 사진 1부, 기타 필
요에 의해 촬영한 사진은 CD-DISC에 저장 보관하여 1부 제출토록 한다.)

1.3 설계변경

- (1) 계산 및 수량 착오 등에 의하여 공사내역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 (2) 공사 시공중 "갑"의 승인 없는 임의의 공법변경 및 시공 등이 발생시 도급
액에서 감액 조치한다.
단, "갑"의 공법개선 기술심의를 통하여 인정된 "을"이 제안한 공법에 대하
여 절감된 공사비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이를 인정한다. 또한 공사여건에 따
라 공종별 시공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
- (3) 계약사항 변경은 "공사 완료후" 도면 및 현장여건에 의한 시공 정미량에 의

하여 정산한다.

1.4 현장 대리인

- (1) "을"은 공사 착공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있으며, 공사 전반적인 사항의 책임자를 "갑"의 확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절대로 재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갑" 임의대로 공사를 해지할 수 있다.
- (2)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사항 일체에 대하여 "을"의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를 "갑"에게 제출한다.
- (3) 공사수행에 있어서 능력과 성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갑"은 이의 교체를 명하여 "을"은 3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1.5 "을"의 부담 항목

- (1) 현장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아도 공사수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사항
- (2) "을"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 (3) "갑"이 지급한 자재의 분실, 오염, 훼손에 대한 관리, "갑"으로부터 각종 자재를 인수한 후에 "을"의 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오염, 훼손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 경우 "을"의 부담으로 변상, 구입, 시공하여야 한다.

1.6 기타

- (1) "갑"은 "갑"의 사정이나 감독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계약일을 조정할 수 있다.
- (2) "을"은 입찰시 "갑"의 요구가 있을시 특정내역의 일위대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 조기작업 및 작업 시간대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당초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4)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5) 현장 내 가설숙소는 인정치 않으며, 가설 사무실과 창고는 "갑"이 지정하는 위치에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정진행상 "갑"의 이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을"의 부담으로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
- (6)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해당시)

"을"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을"은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갑"을 보호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을"은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갑"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갑"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제2장 시 공 내 용

2-1 공사장소 및 범위

(1) 공사장소 : 17개 역사

패법르네시떼, 서부산유통지구, 공항, 덕두, 등구, 평강, 대사, 불암, 지내, 김해대학, 인제대, 김해시청, 부원, 봉황, 수로왕릉, 박물관, 연지공원

(2) 공사범위

- 유리강화도어 상부 데드볼트 설치
- 유리강화도어 상/하부 시건장치 추가설치 ; 관리역별 마스터키 필요
- 유리강화도어 추가설치 : 평강역
- 역사(19개) : 세콤이전 및 자석감지기 설치

(3) 공사물량

항 목	내역	비 고
데드볼트 설치	17개 역사 각 1개소 설치관련 부품, 소모품 일체포함	비상시 잠김형
시건장치 추가설치	21개 역사 유리도어 상하부 설치 마스터키 역사별 5개 관리역(3개소) 별로 마스터키 구성	
유리강화도어 설치	오픈사이즈 : 2,400×3,000 유리강화도어 2짝 설치 : 900×2,200 설치관련 부품, 소모품 일체포함	평강역 1개소 설치
세콤이전	이전설치 및 자석감지기 설치	19개 역사

2-2 재료 및 시공시 주의사항과 검사

2.2.1 재료

- (1) 데드볼트는 DB-1850로 사용하며 비상시 잠김형이어야 한다.
※ 제품 변경시 시스템호환이 되어야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데드볼트 컨트롤러 결선시 자동설비 호환여부를 확인후 관제에서 콘트롤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유리강화도어 및 픽스창은 강화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유리강화도어는 12T, 픽스창은 8T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2.2 시공시 주의사항

- (1) 유리강화도어 설치시 처짐에 유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2) 유리강화도어 틀은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용접작업은 필요시에만 작업 ; 작업전 현장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 이질재간 마감은 재료분리대 혹은 실리콘으로 처리한다.
- (5) 기타 필요시 현장감독자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한다.

2.2.3 검사

- (1) 설치완료후 자체검사 실시하고, 담당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 (2) 현장 및 공사부위의 청소를 반드시 완료한 후 감독자 검사를 받는다.

2.2.4 준공승인 및 대가지급

- (1) 검사완료 후 “을”이 대금지급 의뢰를 “갑”에게 요청하면 “갑”은 “을”에게 대가를 회계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한다.

제3장 안전에 관한 사항

- (1) 작업장에는 “작업중” 이라는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2) 당일 작업 종료 시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수거하여 일괄 반출토록 한다.
- (3) 현장 내 모든 출입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필요시 안전장구를 휴대 착용하여야 하며, "갑"측의 판단에 의해 불안정한 요소가 발견될 시는 "갑"측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갑" 또는 "을"의 손실을 전액 "을"이 부담한다.

- (4) "을"은 당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중 불미스러운 언행이나 폭행, 절도, 불법단체 결성 난동, 작업방해 및 속칭 "사보타지"를 하는 자, 제반 수칙에 불복하는 자 등은 입법조치나 추방하여야 한다.
- (5) "갑"의 직원지시에 불성실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당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즉시 추방해야한다. "을"이 이를 불이행할 시는 최고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이다.
-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

제4장 품질 보증 기간 (하자 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갑"의 회계규정,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